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건설교통부 제8376호
- 공포일자 : 2007. 4. 11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2110-8145)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을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8호·제16호·제31호 및 같은 조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산업자원부 제19987호
- 공포일자 : 2007. 4. 4
- 담당부처 : 가스산업팀(02-2110-5462)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가스 소비량 및 가스의 배관·공급설비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산업자원부 제393호
- 공포일자 : 2007. 4. 3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503-9422)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가스 소비량 및 가스의 배관·공급설비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산업자원부 제20015호
- 공포일자 : 2007. 4. 20
- 담당부처 : 전기용품안전팀(02-509-7245)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할 수 있는 바, 국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의 권한이 이미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건설교통부 제554호
- 공포일자 : 2007. 4. 11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2110-8145)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되어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의 실시를 1년 순연하기로 하는 한편, 규제일몰제가 적용되어

2007년 4월 18일 실효되는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에 관한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분양제 실시 연기(현행 제7조제7항 단서 삭제)

- (1)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가 아니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후분양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후분양제의 실시로 단계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 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 후분양제의 실시를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년 동안 순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3)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안 제8조의2 신설)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도록 하고,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며,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우선공급제도 유효기간 연장(안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

- (1)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에 관한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년 4월 18일 끝나는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확립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2)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의 우선공급제도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행정자치부 제2007-67호
- 예고기간 : 2007. 4. 25 ~ 5. 16
- 담당부처 : 안전기획팀(02-2110-3187)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및 시행령 개정예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 포함.
-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으로 범위를 확대 함.
- 다. 별표1의 관련법 개정예에 따른 긴급구조지원 기관 명칭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행정자치부 제2007-66호
- 예고기간 : 2007. 4. 25 ~ 5. 16
- 담당부처 : 안전기획팀(02-2110-3187)
- 전문참고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정비·보완하고, 재난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의로기관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영자를 추가 포함하도록 함.
- 나. 법 제14조제5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위임사항을 소관 부처에 따라 구분함.
-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관리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 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마. 재난 예·경보 발령을 위한 주요기간통신사업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 운용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바. 자치단체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정함.
- 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정함.
- 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는 재난에서 제외함
- 자.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토록 함.
- 차.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재난발생시 피해상황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카. 재난관리기금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확충사업, 피해현장에 대한 공간 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사용용도를 확대 함.
- 타. 안전기술개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단체와 협약체결 및 지원근거 마련
- 파. 국가기반재난 분야의 재난관리체계정비·평가, 재난 예방교육·홍보, 재난대비훈련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 하. 국가기반재난분야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관하여 표준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 국가기반재난분야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등의 업무 평가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너.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세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정보통신부 제2007-24호
- 예고기간 : 2007. 4. 24 ~ 2007. 5. 14
- 담당부처 : 정책총괄팀(02-750-2312)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 (www.mic.go.kr)

◎ 개정이유

통신위원회의 재정기간,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을 위한 설비의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등 대통령령 및 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위원회의 자료조사 권한강화와 재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통신관련 분쟁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IT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재량행위의 명확화를 통한 법 적 투명성 제고 등 기타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대기업 및 상생협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식에 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승인을 위한 주요 심사사항을 법에 규정
- 다. 현재 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라.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 을 위한 설비의 매각액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에 규정
- 마. 통신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참여기회 확대
 -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과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②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등의 교수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규정된 것을 “학교”로 완화
- 바. 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다른 법률에서 통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도 포함.
- 사. 통신관련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재정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재정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민권리보호 기능 강화
- 아. 통신위원회 재정에 대해 불복으로 다투게 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금액 불복시에만 상대방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
- 자.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한 사건의 진행중소를 제기한 경우 재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신청과 민사소송이 중복 제기된 경우 조치사항을 명확화
- 차. 전기통신산업의 발전과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여 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카. 통신위원회가 재정사건이외에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사업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재난을 대비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명령, 통신재난대책본부장의 주요업무 및 통신사업자 직원파견 요청을 법에 규정하고, 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 파. 정보통신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 실태조사, 상생협력 지수 공표 및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하. 유사인증 업무인 동법상의 형식승인 미표시 기기와 전파법의 형식검증·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백만원 이하로 통일하고, 형식승인 사항 변경 미신고시 과태료를 1백만원 이하로 신규 규정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건설교통부 제8383호
- 공포일자 : 2007. 4. 20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2110-8145)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함.
- 나.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 의무(안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 ②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③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 ④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도록 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3호,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 정보통신부 제2007-22호
- 예고기간 : 2007. 4. 19 ~ 2007. 5. 9
- 담당부처 : 통신정책기획팀(02-750-1333)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 (www.mic.go.kr)

◎ 개정이유

「국회 행정입법 지적사항(2006. 2.15.)」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관련 법령정비계획(2004. 11.)」에 따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 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 국가 등의 자체 설계·감리 근거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
-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발주자의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용역업자가 응하도록 명시 규정 마련
- 공사업등록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에서 부령으로 직접 위임하도록 개선

나. 행정제재내용의 합리적 조정

- 이 법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등록 취소하던 것을 벌금형을 3회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를 완화
- 공사업등록 후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조항 삭제

※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관련법령정비계획(2004.11)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안전관리자)이 소방감리업체(소방기사)에 취직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으로 취직하는 경우, 이중취업으로 처벌받는지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여러곳의 전기설비를 돌아다니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소방감리업체 또는 아파트관리소에 이중으로 취업할 수는 없으며,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는 자격증대여에 해당되어 전기사업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안전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기재해 감소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보다 더 충실히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소기업 차원인 대행사업자로서 경쟁력 부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8.26)

02

- 154kV 사업장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 금년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 제가 있는 지역에는 특별교육이 끝나 서울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교육에 참여하기가 힘든 실정임
- 내년 상반기에 교육 받을 생각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특별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는 당해 전기설비에 선임되기 이전에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중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1과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일정 등은 해당기관(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안전관리 여건을 알지 못하고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03

- 동일소유 독립건물 2동(동간 거리 10m)이 각각의 인입선을 가지고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담이나 울타리가 없으며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음. 각 동별 전기용량은 75kW미만이나 합산하면 75kW초과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대상인지



-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면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 용량은 합산하여 저압 75kW 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으로는 소유자는 1인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고 담·울타리 그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연접된 전기설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도, 도로사용 허가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02)